

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성명(한글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 :)		
학 력 사 항	학교명		
	학과(전공)		
	입학년월일	졸업년월일	

상기인이 졸업한 ① _____ 학과(전공)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 제1호나목의
② _____ 학과(전공)와 동일한 학과(전공)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대학교 총(학)장 또는 ○○ 고등학교 교장 (직인)

○○○ 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졸업증명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정하며,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) 2. 성적증명서(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) 3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	
1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 제1호나목의 학과(전공)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(전공)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2. "① 학과(전공)"은 신청인이 졸업한 학과(전공)명을 기재합니다. 3. "② 학과(전공)"은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 제1호나목 중 해당 학과(전공)명을 기재합니다. ※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4의2] 제1호나목 나. "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. - 소방안전관리학과(소방안전관리과, 소방시스템과, 소방학과, 소방환경관리과,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) -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) -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) -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, 정밀기계공학과) -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) -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) 4. "○○○ 협회장 귀하"는 인정자격자,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"한국소방시설협회장"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"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"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	